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의 자격요건 및 기준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학생, 청년, 학부모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2항제5호의 “학생”은 임명 또는 위촉 당시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법 제3조제2항제5호의 “청년”은 임명 또는 위촉 당시에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법 제3조제2항제5호의 “학부모”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에 자녀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원 관련 단체 등) ①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교원 관련 단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전국단위로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회원일 경우 회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음)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는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교원 관련 단체 간 자율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 중 회원수 또는 조합원수가 많은 교원 관련 단체 순으로 추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교원 관련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회원수 또는 조합원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등) ① 법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추천권자 및 지명권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지정 및 표기하고 그 사유를 적시하여 추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권자 및 지명권자가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명 당시의 직에 해당하는 요건을 지정 및 표기하여 추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법 제3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권자 및 지명권자인 국회 및 대통령은 추천 또는 지명한 사람 중 초과 인원내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표>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법 제3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다시 추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제5조(영리업무의 한계)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발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6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발전계획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또는 변경한다.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4. 그 밖에 발전계획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위원회가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발전계획 변경 시 중대한 사정 변경은 급격한 사회변화 또는 천재지변 등을 말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이행점검 및 공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과 그 해의 추진실적점검지침을 정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연도의 추진실적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목표 달성도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전년도 대비 향상도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심의

를 마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 홈페이지 공개 등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등)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요청에 필요한 국민의 수는 10만 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 요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된 때로부터 45일 이내에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여부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결과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3

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국민의견의 수렴·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한 관계기관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11조(이행계획 제출)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12조(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위원회에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

로 구성하되, 의장이 상정 안전에 관련되는 위원만으로 출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하기로 심의·의결한 사항 등

④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사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제13조(국민참여위원회) ① 국민참여위원회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인원의 5분의 3 이상으로 한다.

1.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공개모집 등의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그 밖에 국민참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전문적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of 잔여임기로 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는 상근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상근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명칭, 역할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6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전문위원은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한 전문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상근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제의 전문적인 검토

2.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의 검토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그 밖에 전문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7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위원회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연구기관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위원회가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센터의 업무 범위와 내용 및 지정기간

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별표]

위원을 다시 추천 또는 지명하는 인원표(제4조제2항 관련)

초과인원 ¹⁾	추천·지명권자별 재추천·지명 인원	
	국회	대통령
1	1	0
2	1	1
3	2	1
4	2	2
5	3	2
6	4	2
7	4	3
8	5	3
9	6	3
10	6	4
11	7	4
12	7	5
13	8	5
14	9	5

1) 초과인원: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는 인원을 말함